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33호

**강동구 길동 367-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
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2호(2021.2.4.)로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 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된 강동구 길동 367-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강동구 길동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강동구 길동 367-1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26일
서울특별시

I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: 변경 없음

- 명 칭 : 강동구 길동 367-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7-1번지
- 면 적 : 1,541.5㎡

2. 촉진지구 지정일 : 변경 없음

3. 사업의 종류 : 변경 없음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[변경]

[기정]

- 명 칭 : 주식회사 서울청년주택
- 대표자 성명 : 이광서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10, 603호(잠실동, 엠비씨아카데미빌딩)
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063178

[변경]

- 명 칭 : 주식회사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

- 대표자 성명 : 이광서
 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
 ○ 법인등록번호 : 110111-8051354
 ■ 변경사유: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변경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 및 주소[변경]

1) 토지세목조서[변경]

〈기정〉

				(㎡)								
1		367-1		1,541.5	1,541.5		9 10, 603 (,)	100%	-	-	-	
				1,541.5	1,541.5	-						

〈변경〉

				(㎡)								
1		367-1		1,541.5	1,541.5	[] 37	517, 26 , 33 (,)	100%	-	-	-	
				1,541.5	1,541.5	[]	108 ()	-				

■ 변경사유: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

2) 물건조서 : 변경 없음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-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
 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(☎02-2133-6296) 및 강동구청 성안별관 1층 건축과(☎02-3425-609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 : 변경 없음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[변경]

[기정]

- ☐ 명 칭 : 주식회사 서울청년주택
- ☐ 대표자 성명 : 이광서
- 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10, 603호(잠실동, 엠비씨아카데미빌딩)
- ☐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063178

[변경]

- ☐ 명 칭 : 주식회사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
- ☐ 대표자 성명 : 이광서
- 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
- ☐ 법인등록번호 : 110111-8051354

■ 변경사유: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변경

3.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: 변경 없음

4. 토지이용계획 : 변경 없음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 : 변경 없음
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: 변경 없음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 도면게재생략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3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

나) 용도지구 결정조서 : 해당 없음

다)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해당 없음

4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가)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나)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다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라) 공공기여계획 : 변경 없음

마)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: 게재 생략

2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3. 방재계획 : 변경 없음
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[변경]

1) 토지세목조서

<기정>

				(㎡)								
1		367-1		1,541.5	1,541.5		9 10, 603 (,)	100%	-	-	-	
				1,541.5	1,541.5	-						

〈변경〉

				(㎡)								
1		367-1		1,541.5	1,541.5	[] 37	517, 26 , 33 ()	100%	-	-	-	
						[] 108 ()						
				1,541.5	1,541.5	-						

■ 변경사유: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

- 2) 물건조서 : 변경 없음
- 3) 토지취득방법 : 변경 없음
- 4)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: 변경 없음
- 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- 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- 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